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면책조항

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매도의 제안이나 권유,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 거래 플랫폼의 구축,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본 정보는 개개인의 목표,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CME 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 CME 그룹은 어떠한 제 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 승인, 보증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CME 그룹 및 “芝商所”는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Globex 로고, E-mini, E-micro, Globex,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CME”)의 상표입니다.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Inc. (“CBOT”)의 상표입니다.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 (“NYMEX”)의 상표입니다.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 복제, 검색시스템에 저장, 전송, 복사,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Company,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공인시장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자동매매서비스)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 25 호 금융상품거래법(1948년, 개정)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CME 그룹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 9 조 5 항 및 2001년 기업법(C)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전문투자자”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거래소	CME, CBOT, NYMEX, COMEX
주제	가장매매(Wash Trade) 금지
참조 규정	규정 534
권고일	2019년 4월 11일
권고 번호	CME 그룹 RA1905-5
발효일	2019년 4월 25일

관련 CFTC 규정 검토 기간을 조건부로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거래일을 기하여 발효되는 본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은 2017년 9월 18일에 발행된 CME 그룹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 RA1712-5를 대체합니다. 본 권고 공지문은 CME Globex 전산거래 플랫폼의 개장 준비 기간 동안의 행위와 관련한 본 권고 공지문 FAQ 18번 답변을 삭제하고 Globex 개장 준비 기간 동안의 주문 입력에 대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좀 더 포괄적인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을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아래에 명시한 규정 534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권고 공지문은 규정 534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입니다. 회원사는 모든 회사 임직원과 고객이 규정 534 및 본 권고 공지문의 지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것이 권고됩니다.

규정 575 ("가장매매 금지")

그 어떤 사람도 해당 주문의 목적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진실한(bona fide)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가장매매나 가장매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불리는 거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 동일한 상품과 만기월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행사가의 풋이나 콜 옵션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 리스크나 가격 경쟁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입력한 여러 공동 실소유주 계좌들을 위한 매수, 매도 주문 또한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주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실행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권고 공지문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 시장규제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rin Middleton, Manager,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41.3286
Robert Sniegowski, Executive Director, Rules & Regulatory Outreach, 312.341.5991

본 권고 공지문과 관련한 미디어 문의는 CME그룹의 기업홍보팀 312.930.3434에 문의하십시오.

규정 534("가장매매 금지") 관련 FAQ

Q1: 가장매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1: 가장매매라 함은 특정 거래나 일련의 거래가 진실된(bona fide)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허위 매매의 형태로서, 시장 리스크나 가격 경쟁과는 무관하게 진실된 시장 포지션을 확보할 의도 없이 입력되었거나, 진실된 거래를 실행할 의도 없이 입력된 거래입니다. 가장매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명백한 거래를 개시, 실행 또는 수용하는 당사자들은 규정 534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장매매는 다음의 요건을 성립하여야 합니다.

- a) 거래나 일련의 거래가 가장매매의 결과를 가져옴. 즉,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 또는 공동의 실소유자가 소유한 계좌에서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 또는 유사한 가격에 매수, 매도하는 행위. 그리고
- b) 해당 당사자(들)이 가장매매의 결과를 얻고자 의도한 경우. 의도성은 사전 협의 증거나 해당 주문이나 거래(들)가 해당 당사자(들)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명백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입력되거나,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장리스크를 무효화할 의도로 CME 그룹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사전 협의, 실행 또는 구성하는 행위는 그러한 거래가 규정 539.C.("Globex 거래와 관련한 실행 전 커뮤니케이션")와 같이 사전 협의를 허용하는 다른 규정들에 준하여 입력 및/또는 실행된 거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 534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가장매매를 금지하는 규정 534의 맥락에서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 또는 공동의 실소유주의 계좌"를 보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에는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는 계좌는 물론, 동일한 모기업이 100% 완전하게 소유한 서로 다른 기관들의 계좌도 포함됩니다.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는 더 포괄적이며, 동일한 실소유주의 계좌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소유주의 지분이 100% 미만인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까지 포함됩니다.

Q3: 시장 참가자가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상품, 만기월, 또는 옵션 시리즈에 대해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수락하거나, 실행할 수 있나요?

A3: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수락하는 일체의 시장 참가자 및 그러한 주문을 실행하는 일체의 시장 참가자가 그러한 주문의 실행이 가장매매의 결과를 가져오고, 해당 거래가 시장 리스크나 가격 경쟁에 따라 진실된 거래를 체결할 의도 없이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규정 534를 위반하게 됩니다.

Q4: 제 3자가 제출한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수령할 때, 주문을 수령하는 시장 참가자는 그러한 주문이 진실된(bona fide) 주문인지 확인할 개별적인 책임이 있나요?

A4: 예. CFTC는 실행을 목적으로 제출된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수령하는 계좌 담당자(account executives)와 플로어 브로커(floor brokers)를 포함한 시장 참가자들이 그러한 주문의 적절성에 관해 독립적으로 "물어볼 의무"를 지닌다는 해석(예, "Three Eight Corporation 관련 사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을 수령하는 시장 참가자는 해당 주문의 실행이 가장매매 결과를 가져올 경우, 가장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주문의 실행을 동시에 요청받는 시장 참가자들은 반드시 해당 주문들이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의 주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질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매수·매도 주문들이 하나의 옴니버스 계좌에서 제출된 주문인 경우, 해당 시장 참가자는 해당 주문들이 옴니버스 계좌 내 각기 다른 계좌주의 주문인지 질의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정 시장 참가자가 요청받은 동시 매수·매도 주문이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 참가자는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 없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을 수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는 해당 주문의 실행이 가장매매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잠재적 규제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Q5: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한 매수·매도 주문이 적법한 목적으로 동시에 제출될 경우, 그러한 주문들을 규정 534 에 준하여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전산 거래장의 경우, 해당 주문 중 한 주문을 먼저 전산 거래 플랫폼에 입력하여 완전히 체결된 후에 두 번째 주문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주문들이 반대 방향에서 서로 체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 주문들의 입력과 실행에 관한 명료한 감사 추적 기록(audit trail)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산 플랫폼에 입력되지 않은 일체의 주문에는 주문 수령 즉시 타임스탬프를 찍은(timestamped) 서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개 호가 거래장(open outcry)의 경우, 매수, 매도 주문은 수령 즉시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해당 주문 중 한 주문을 거래소(pit)에 제출하여 실행하고 타임스탬프를 찍은 후, 두 번째 주문을 거래소(pit)에 제출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문도 거래소(pit)에 제출하는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당 주문들이 반대편에서 서로 체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 주문들이 동시 실행을 목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산 거래장이나 공개 호가 거래장 모두에서 매수·매도 주문의 제출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는 해당 주문들이 주문 조건에 따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간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문들이 다른 시간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공통의 제 3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대방향에서 서로 거래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불법적인 가장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부 상황에서,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해 동시에 제출된 매수·매도 주문이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동일한 가격(완전히 동일한 가격은 아니라도)에 실행되는 경우, 해당 주문들이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두 주문의 가격 차이가 극도로 미미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가장매매 금지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6: 동시 매수·매도 주문을 다른 FCM 이나 다른 플로어 브로커에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하여 동시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6: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당 주문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간에 거래되거나, 두 주문 모두 동일한 제 3 자와 거래되면 해당 주문들이 금지된 가장매매를 실행할 의도로 구성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주문들이 가장매매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해당 주문들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사전 협의 없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주문을 입력한 당사자를 해당 주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7: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를 위하여 동시 매수·매도 주문을 일임(discretionary, "DRT") 실행의 형태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7: 실행 가격 및/또는 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실행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지시에 의해 제출된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의 동시 매수·매도 주문은 상황에 따라 이를 실행할 당사자에게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묵시적 요청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주문들의 실행이 가장매매의 결과를 가져오면 해당 주문들을 제출, 수락 및 실행하는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가장매매에 참여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8: 시장 참가자들은 가장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특정 포지션을 처분하고 재구성하여 포지션 일자를 갱신 (즉, 특정 포지션을 처분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 할 수 있나요?

A8: 가장 오래된 매수 포지션에 대해 실물 인도를 통해 결제하는 상품의 경우, CME 및 CBOT 규정 807(“인도월 중의 미결제 매수 포지션”)에 의거하여 일중에 포지션 일자를 갱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포지션 일자를 갱신하기 위하여 특정 포지션을 처분하고 재구성하는 거래는 반드시 경쟁적인 상황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시장 리스크에 예측되는 명백하게 독립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특정 포지션의 일자를 갱신하기 위해, 사전 협의되거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실행하는 매수·매도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Q9: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들의 서로 다른 계좌 간 대량매매는 가장매매 금지 규정에 위배되나요?

A9: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들의 다른 계좌 간 대량매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 a) 대량매매를 체결하기로 한 각 당사자의 결정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됨.
- b) 각 당사자에게 해당 대량 매매에 참여할 합법적이고 개별적인 진실된 사업상 목적이 있음, 그리고
- c) 해당 대량매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실행됨.

전술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는 규정 534에 의해 금지된 불법적인 가장매매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0: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에서 제출된 매수·매도 주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시되고 그러한 주문들이 시장에서 우연히 매칭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가장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10: 정당하고 개별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에서 개시되어 경쟁 시장에서 우연히 매칭되는 매수·매도 주문은 그러한 거래가 사전 협의되지 않았고, 거래 양방 중 누구도 상대방의 주문을 알지 못했거나 일방의 주문을 상대방의 주문을 상대로 실행할 의도가 없는 한, 가장매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 간에 이뤄지는 거래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래들이 진실된 거래임을 입증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장 참가자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Q12, Q13, Q14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어떤 경우에 전산 플랫폼에서 자신의 주문의 반대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규정 534에 위반되나요?

A11: 자신의 주문이 시장의 반대방향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본인의 주문에 매칭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전산 플랫폼에 이러한 주문을 입력하는 것은 규정 534의 위반입니다. 개인 거래자가 전산 플랫폼에 입력한 의도하지 않은 매수·매도 주문의

우연한 매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534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매칭이 해당 거래자 행위의 맥락이나 특정 시장 행위의 맥락에서 우연을 넘어서는 정도로 발생하면 그러한 거래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연을 넘어서는 정도로 자기 매칭 가능성이 있는 주문을 시장의 반대편에 빈번하게 입력하는 개인 거래자는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서로 매칭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CME 그룹이 선택 기능으로 제공하는 자기 매칭 방지("SMP") 기능은 동일한 SMP ID를 사용하여 Globex에 제출된 공동 소유 계좌의 매수·매도 주문이 서로 매칭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CME 그룹의 SMP 기능](#)에 관한 일체의 질문이 있으면 CME 글로벌 계좌 관리 부서로 (312) 634-8700(미국), 44 203 379 3754(유럽), 또는 65 6593 5574(아시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12: 동일한 회사 내의 서로 다른 자기매매 트레이더(proprietary traders)들이 독립적으로 개시한 주문이 서로 매칭되면 규정 534에 위배되나요?

A12: 다수 회사가 공동명의 계좌(해당 회사의 자기매매 계좌)를 위해 완전하게 독립적인 거래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러 명의 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거래로 인하여 전산 플랫폼에서 서로의 거래가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매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각 독립적인 트레이더의 각 주문이 진실한 거래 실행을 목적으로 선의로 입력되고, 사전 협의 없이 입력되고, 다른 트레이더의 주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력되는 한, 그러한 거래들은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룹에 속한 완전하게 독립적인 트레이더들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주문이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서로 매칭되는 경우 그러한 주문들이 진실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로 개시되고, 해당 알고리즘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각 거래 그룹이 서로의 주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장매매로 간주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들은 자사 직원과 알고리즘에 의한 거래를 감독할 의무를 지니며, 반드시 트레이더/트레이딩 그룹/알고리즘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트레이더들이 서로의 주문에 액세스하거나 주문에 대해 아는 것을 방지할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문 입력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팀 (ATS team)에 부여된 운영자 ID(Tag 50 ID로도 불림)는 반드시 규정 576 ("Globex 단말기 운영자의 식별") 및 관련 시장규정 권고 공지문에 준하여 고유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Q13: 동일한 개인이나 동일한 트레이더 그룹에 의해 운영 및/또는 관리되는 복수의 자동화 거래 시스템에 의해 개시된 주문들이 서로의 주문과 매칭되면 규정 534의 위반이 되나요?

A13: 특정 알고리즘이 서로 매칭될 가능성이 있는 매수·매도 주문을 생성하고 그러한 거래가 알고리즘 행위의 맥락이나, 특정 시장 행위의 맥락에서 우연을 넘어서는 정도로 발생하면 그러한 거래는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알고리즘 운영 책임을 맡은 해당 당사자(들)은 알고리즘의 매수·매도 주문이 서로 매칭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달리 독립적인 알고리즘이 동일한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운영 및/또는 통제되고 해당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행위의 맥락이나 특정 시장 행위의 맥락에서 우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서로간에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알고리즘들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운영되거나 관리되는 복수의 알고리즘이 우연을 넘어서 수준을 자기 매칭 이벤트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팀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Q14: 거래소가 후원하는 볼륨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규정 534와 관련하여 특수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A14: 특정한 거래량을 충족하는 것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연계된 거래소 후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공동의 실소유주 계좌 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대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보다 엄격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그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Q15: "우연을 넘어서는" 자기 매칭이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선이 있나요?

A15: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은 (비자동 거래이거나 자동 거래이거나) 본인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기 매칭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을 최소화할 책임을 지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기 매칭 사례는 해당 트레이더, 트레이드 그룹, 또는 알고리즘(들) 활동의 맥락에서, 그리고 해당 거래 및 상품의 거래량을 고려하여 평가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 매칭은 보다 엄격한 규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가장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 매칭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 참가자들은 본인의 거래 전략을 조정하거나 자기 매칭 이벤트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Q16: CME 그룹의 자기 매칭 방지 기능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16: CME 그룹의 SMP 기능은 선택 사항입니다. 각 회사는 SMP ID의 기능 및 사용법을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거래 전략에 적합한 형태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SMP ID 구성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CME 글로벌 계좌 관리 부서(Global Account Management)에 연락하십시오. CME 그룹 SMP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megroup.com/globex/trade-on-cme-globex/self-match-faq.html>

그러나 모든 CME 그룹 거래소 규정은 물론, 상품거래소법 또한 불법적인 가장매매를 금지함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립니다. 회사와 시장 참가자들은 자사의 운영과 본 권고 공지문의 지침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SMP 기능이나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하여 그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17: CME 그룹의 자기 매칭 방지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잠재적인 자기 매칭을 방지하나요?

A17: CME 그룹의 SMP 기능은 내재된 스프레드 기능이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거래가 내재된 주문(implied order)일 경우 자기 매칭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CME 그룹 거래소는 내재된 주문의 자기 매칭 거래는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추가로, CME 그룹의 SMP 기능은 Globex 개장 준비 시간(pre-open)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해당 시장 개장 시 개장 준비 시간(pre-open)에 입력된 주문의 자기 매칭을 방지하지도 않습니다.

Q18: Globex 의 개장 준비 시간에 입력하여 주문장(order book)에 대기 중이던 주문이 개장 시 매칭되면 규정 534 에 위배되나요?

A18: [CME GLOBEX 개장 준비 기간 동안의 주문 입력에 관한 CME 그룹의 시장 규정 권고 공지문](#)을 참조하십시오.

Q19: 간접 가장매매(indirect wash trade)란 무엇인가요?

A19: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하나 이상의 매수(매도) 실행 후 동일한 가격 또는 비슷한 가격에 동일한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매도(매수)하는 것은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거나 철저히 제한할 목적으로 주문을 입력하는 경우면 규정 534 를 위반하는 "간접적 가장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주문들이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거나 철저히 제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그 어떤 사람도 해당 주문들의 그러한 특성을 알면서도 주문을 수락하거나, 실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간접적 가장매매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본 권고 공지문의 FAQ 21 답변 다음에 나오는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Q20: 간접 가장매매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규정 534 의 위반이 성립되나요?

A20: 아니요.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진실한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주문을 입력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분명하다면, 간접 가장매매가 사전 협의되었어야만 규정 534 의 위반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21: 연쇄 간접 가장매매란 무엇이며 그러한 거래는 규정 534 에 위배되나요?

A21: 주문 입력과 거래 활동이 개별적이고 제한된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 시장 참가자 그룹 간에 실행된 연속적인 거래는 해당 거래의 목적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 진실한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해당 당사자들이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음이 분명한 범위 내에서 규정 534 를 위반하는 "연쇄 간접 가장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간접 가장매매 활동의 예시

- 참가자 A 와 B 가 결제월에 가장 오래된 미결제 매수 포지션에 대해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실물 인도 상품에 대해 미결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인도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참가자 A 와 B 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상쇄하고 재구성하는 효과를 지닌 거래를 실행하여 포지션 일자를 갱신하고자 사전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첫 거래에서 참가자 A 와 B 는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반대편 매매를 실행합니다. 대개 첫 거래 실행 후 바로 진행되는 후속 거래에서 참가자 A 와 B 는 의도적으로 첫 거래 가격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가격에 반대편에서 서로 상쇄되는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거래 세트에서 매도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매수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더 최신의 포지션 일자로 갱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가자 A 와 B 는 거래를 사전 조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장 리스크를 무효화하거나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세트는 규정 534 를 위반하는 간접적인 가장매매를 성립합니다.
- 참가자 A, B, C 는 인센티브 또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사입니다.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각각 일정 수준의 물량 요건(예, 일일 거래량, 월간 거래량 및 패시브 거래 물량(passively traded volume)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된 상태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 A, B, 및/또는 C 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간 간격을 두고 일련의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편에서 유사한 수량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에 매매하고 일련의 거래를 마친 시점에 참가자들의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거래 활동, 시장 상황, 시장 지식 또는 사전 협의를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음) 요인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해당 거래가 가격 경쟁에 노출되거나, 해당 포지션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가격 경쟁에 노출되거나, 해당 포지션이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거래는 규정 534 를 위반하는 간접 가장매매로 간주됩니다.